참고 9 불규칙적 근무자 미취업 처리기준

1 검토배경

○ 현행 '미취업' 기준(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)은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구직자에게는 적용이 어려워, 동 대상을 위한 상세 처리 기준 마련 ※ (예시) 1주차에는 22시간 근무하였으나 2주차에는 8시간 근무한 경우

2 처리기준

- o 산정 대상 기간 동안의 일 평균 근로시간이 2.86시간*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판단
 - ※ 기존 미취업 기준(주 20시간)을 이용하여 도출한 값임(20÷7=약 2.86)

(일 평균 근로시간) =
$$\frac{(기간 내 총 근로시간)}{(산정 대상 기간)}$$
 > $2.86 \rightarrow$ 취업
 $\leq 2.86 \rightarrow$ 미취업

- o 용어 설명
 - 산정 대상 기간: 미취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기간
 - ① 첫 보고서 제출 시: 선정 익일(당월 9일)부터 첫 보고서 제출 마감일(당월 20일)까지
 - ② 이후 보고서 제출 시: 지난 보고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(전월 21일)부터 이번 보고서 제출 마감일(당월 20일)까지
 - ※ (예시1) 2.19에 신청했고 3.8에 선정되었으면, 3.9~3.20까지(총 12일)가 산정 대상 기간
 - ※ (예시2) 4.20까지 2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, 3.21~4.20까지(총 31일)가 산정 대상 기간
 - 기간 내 총 근로시간 : 산정 대상 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
 - ※ (예시) 산정 대상 기간 동안 8시간, 6시간, 5시간씩 3일간 근무한 경우 기간 내 총 근로시간은 8+6+5=19시간